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2
----------	-----

2015. 12. 21.(월)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임회무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3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15일

-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임회무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
-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와 지상변압기함을 추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입간판 표시방법을 신설(안 제10조의 2)
-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, 지상변압기함을 추가 (안 제11조)
-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서 “지상변압기함”을 삭제 (안 제2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-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등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설치하면 무분별한 광고물로부터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.
- 시군 광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수정가결”

가. 수정사유

- 무분별한 광고물로부터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광고는 시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
-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맞게 수수료 반환규정 반영

나. 주요내용

-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지상변압기함을 삭제하고 ②항에 시·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함. (안 제11조)
- 수수료 조항 중 광고물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(안 제32조)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)」

의안번호	제 202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7월 일 (제 341 회)

**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임회무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6월 23일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회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6월 23일

발 의 자 : 임회무, 김영주, 엄재창
연철흙, 윤은희, 최광옥
박병진

1. 개정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
-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와 지상변압기함을 추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입간판 표시방법을 신설(안 제10조의 2)
- 나.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, 지상변압기함을 추가 (안 제11조)
- 다.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서 “지상변압기함” 을 삭제 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, 제24조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
 - (1) 입법예고 : 2015. 6. 8 ~ 2015. 6. 18
 - 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입간판의 표시방법) ①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1. 영 제 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.
2.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.2미터 이하, 1면의 면적은 0.6제곱미터 이하, 간판의 합계면적은 1.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체형·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4.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,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,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
5.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.

③ 태풍·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

②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서 표시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,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,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·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.

제32조제2항 후단 “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(신설)	<p>제10조의2(입간판의 표시방법)</p> <p>①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영 제 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.</p> <p>2.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3.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.2미터 이하, 1면의 면적은 0.6제곱미터 이하, 간판의 합계면적은 1.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체형·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</p> <p>4.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,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,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5.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.</p> <p>③ 태풍·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.</p>	<p>제10조의2(입간판의 표시방법)</p> <p>①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영 제 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.</p> <p>2.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3.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.2미터 이하, 1면의 면적은 0.6제곱미터 이하, 간판의 합계면적은 1.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체형·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</p> <p>4.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,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,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5.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.</p> <p>③ 태풍·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.</p>

제11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 영 제17조제1호 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휴지통
2. 벤치
3. 공공자전거보관대 (신설)

4. 그 밖에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편익시설물

제20조(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) (생략)

1. ~ 7. (생략)
8. 지상변압기함
9. 도로명 안내시설물

제32조(수수료) ① (생략)

② -----

-----,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 영 제17조제1호 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휴지통
2. 벤치
3. 공공자전거보관대
4.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

5. 지상변압기함
6. 그 밖에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편익시설물

제20조(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) (현행과 같음)

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(삭제)
8. 도로명 안내시설물

제32조(수수료) ① (생략)

② -----

-----,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 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휴지통
2. 벤치
3. 공공자전거보관대
4.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
5. (삭제)

5. 그 밖에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편익시설물

제20조(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) (현행과 같음)

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지상변압기함
9. 도로명 안내시설물

제32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,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
제3조(옥외광고물의 분류) 옥외광고물(이하 "광고물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 <개정 2014.12.9.>

6의2. 입간판: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, 아크릴 또는 조레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

제24조(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)

2.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

가. 도로표지·교통안전표지·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

나. 전봇대

다. 가로등기둥[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기둥에 가로등 현수기(懸垂旗)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

라. 가로수

마. 동상 및 기념비

바. 발전소·변전소·송신탑·송전탑·가스탱크·유류탱크 및 수도탱크

사. 우편함·소화전 및 화재경보기

아. 전망대 및 전망탑

자. 담장(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)

차. 재배 중인 농작물

카.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·도 조레로 정하는 물건